

<p>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검토의견</p> <p>(총괄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 사건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인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p>(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91.5.8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3년 임기의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피해조사나 분쟁해소를 위한 알선·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95년이후 현재까지 조정실적은 신청건수 11건에 처리건수 1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날로 환경분쟁이 확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처리기간 등 규정이 없는 것은 명문화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위원 3인의 전원 출석에 2인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것은 조정위원이 너무 소수인 관계로 공정한 분쟁해결을 해칠 우려가 있음. ○ 환경분쟁조정법에는 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조정위원회로 각각 설치토록(법 제4조) 규정되어 있으나, 이해당사자가 지방조정위원회를 경과치 아니하여도 중앙조정위원회로 적결조정요구할 수 있어 지방조정위원회 조정역 할이 제한적이어서 5년간 11건 신청에 1건 처리라는 위원회 설치의의 조차 혼란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두 개 시·도가 겹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등(법 제6조, 시행령 제3조)을 제외한 사항은 지방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p>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검토의견</p> <p>(총괄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하여 그 기능을 수행해 온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략의 수립, 환경보전, 서울의 제21의 실천 및 그 이행상황 점검 등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시정구현은 물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p>(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환경정책 심의, 대안제시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95년 11월에 100명이내 위촉위원으로 설치되어 현재 환경전문가, NGO대표, 언론인, 시민 등 67명 위원이 정책, 시민참여, 환경오염감시 등 3개 분과위를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의 제21작성 및 추진, 공모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주요활동을 하여 왔음. ○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녹색서울시민위원회구성·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공무원의 참여배제로 본래의 심의·자문역할 미흡, 「서울의 제21」추진을 위한 실천조직 부재로 추진미흡 등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요구되어 새로운 기구의 신설보다 현재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평가, 자문의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은 공정적이라고 생각됨.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현행 「위촉위원장 1인」에서 「시장, 시민대표, 기업대표 등 3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위원 100인이
--

20 (第17回-環境水資源第7次)

내」에서 「시의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하며, 조직은 현행 「집행위원회, 정책분과, 참여분과, 감시분과 등 3개 분과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 서울의제21 실천 협의회, 지속발전정책분과, 홍보·교육분과」 등의 체제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실천 기능을 갖춘 추진력 있는 분과위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는 환경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협의회 및 2개의 분과위원회 정원 외에 별도정원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근거로 기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 제1조(목적)에 환경오염 감시활동이 주요목적 중에 하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능중 일부로 되어 환경오염 감시활동의 축소나 경시우려가 있고, 집행위원회 구성인원 25명 중 당연직위원으로 시공무원 7명이 자동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집행위원회가 서울시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기존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기본정신이 시민참여·자율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됨.
- 동 조례개정안이 11월 20일~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1건의 의견도 없었다는 점과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듣도록 한다는 점에서, 또한 위원장 3인 공동체로 되어 책임소재의 불명확, 위원장간의 권한·조정상의 문제, 사무담당위원의 실질적인 유급직화 등을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參 照)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등 국제연합 지속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지속가능”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효과·사회적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 제시 및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한 주요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3.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상황점검, 자치구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4. 환경개선·보전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홍보, 환경 감시활동 등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관리실장·교통관리실장·시정기획관·산업경제국장·도시계획국장·건설국장·주택국장과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각각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2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 1인과 기업을 대표하는 자 1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부위원장 3인과 감사 2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부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회장과 2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